

군포도시공사 제3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정관」 일부개정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5년 6월 27일

군포도시공사 정관 제 10 호

## 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중 ‘군포첨단산업2로22번길 5(부곡동)’를 ‘군포시 공단로 304(금정동)’로 변경한다.

## 부 칙

이 정관은 2025. 7. 1. 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과 성 우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 3 9 0 - 7 6 1 4 )

